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였으나, 서류의 재송달 절차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.

1. 건명: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
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오*창	1992. 09. **.	순천시 북문4길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	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(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)	동 서류를 2019년 8월1일, 2019년 8월 16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 부재)

4. 이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5. 공고기간: 2019. 9. 4. ~ 2019. 9. 19.(15일간)
6. 기타 사항은 순천고용복지+센터 취업지원팀 박원위(☎ 061-720-912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9. 4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장

